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19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『특별공적』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 (안 제2조)

나.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(안 제3조)

- 현 행
 - 1년차 채납액 : 징수액의 1/100
 - 2년차 이상 채납액 : 징수액의 5/100
- 개정안
 - 1년차 채납액 : 징수액의 1/100
 - 2년차 채납액 : 징수액의 3/100
 - 3년차 이상 채납액 : 징수액의 5/100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예산

나. 입법예고(2006.05.18~2006.06.7)결과 : 의견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”로 한다

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2년차 이상”을 “2년차의”로 하고,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3”으로 하며,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되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
제3조의2 중 “제3조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3조제1호 내지 제3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,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, 부과한 당해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. <단서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과년도 미수액 중 <u>2년차 이상</u>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<u>100분의 5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. 다만,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2년차의</u> ----- ----- <u>100분의 3</u></p> <p>3. <u>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</u></p>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3. 도로·하천·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·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</p> <p>4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. 다만,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5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, 공제 또는 환급받는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</p> <p><u>제3조의2(지급한도) 제3조제1호 및 제2호</u>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제3조의2(지급한도)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</u>의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